



원단 이송용 롤러 사이에 끼임



재해개요

2024. 11. 00.(토) 09:20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원단
기모 가공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전모기 가공부
후면에서 에어건으로 섬유 분진을 불어내던 중
원단 이송용 롤러에 양 팔이 끼임



발생원인

- ▶ 설비 운전 중인 상태에서 청소 작업 실시
 - 설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설비에 근접하여 섬유 분진 제거 작업 실시
- ▶ 울 등 방호조치 미실시
 - 상·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형성되는 위험점(물림점)에 울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로 위험점 노출
- ▶ 비상정지장치 미설치
 -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작업자가 설비를 긴급 정지하지 못하여 위험을 회피 또는 결과의 중대성 감소 실패

예방대책

- ①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설비 운전 정지
 - 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설비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
 - 제3자에 의한 불시기동 방지를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(LOTO)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
- ② 울 등 방호조치 실시
 - 물림점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 등 방호조치 실시
- ③ 비상정지장치 설치
 - 물림점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갈 경우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 설치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떨어짐



재해개요

2025. 01. 00.(금) 16:00경 부천시 소재
(주)0000 업무시설 해체 및 신축공사
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
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
실족하여 2.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


발생원인

▶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
- (안전난간 미설치) 이동식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추락

▶ 개인보호구 미착용

- (안전대 미착용)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
- (안전모 미착용) 이동식비계 단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추락



예방대책

1 이동식비계 조립 기준 준수

-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설치

2 개인보호구 지급, 착용 철저

-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
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

3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-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